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2월 3일, 김태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2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 상정, 축조심사, 의
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
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태선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라는 용어는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등 다양한 주거형태를 포괄하기 어렵고, 현행 규정이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본적인 안전·위생기준 확보에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시설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한석현)

개정안은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야 하는 주거시설 관련 정보에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최근 대법원이 농장에서 일하며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

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계획 수립하지도 않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¹⁾ 확정하여,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주거권을 보호할 책임이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인정한 점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2025년도부터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세부사업중²⁾ “외국인근로자고용관리”라는 내역사업으로 내역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공공주거시설 건립을 위한 초기 시설 지원 비용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주거시설 관련 정보에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개정안은 현행 법령에도 규정되어있는바,³⁾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 서울고등법원 2024나56742

2) 사업코드 3051-308

3) p.5 각주 1번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생 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사항

없 음